

##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박 은 옥\*

- 
- I. 서언
  - II. 중재개시 전 법원의 개입
  - III. 중재절차 진행 중의 법원의 개입
  - IV.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의 법원의 개입
  - V. 결론
- 

### I. 서언

중재는 사인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즉, 양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는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자는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듯 중재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정립되어진 제도인 만큼 국가의 사법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일방당사자가 중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중재합의의 목적인 분쟁해결은 달성되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며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재에 있어서의 법원의 개입과 역할에 대한 논쟁은 중재제도가 처음 생기

---

\* 배화여자대학 강사

고 발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원의 개입을 중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적이고 지원적 역할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재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역할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이 법적효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델법 제5조(extent of court intervention)에서는 법원의 개입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이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중재의 독립에 대한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재에 있어서의 법원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재에 대한 법원의 보조와 감시의 역할을 규정해 둔 것이라 볼 수 있다.<sup>1)</sup> 또한 법원<sup>2)</sup>의 개입 범위에 대하여 한정해 두었는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동 모델법 제6조에 명시해 두었다. 제6조에 따르면 법원은 중재인의 선정(제11조 3항, 4항), 중재인의 기피(제13조 3항), 중재인의 권한종료(제14조),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제16조 3항), 그리고 중재취소(제34조 2항)에 있어 관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3)</sup>

우리나라 중재법 제6조에도 “법원<sup>4)</sup>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법원의 개입을 한정하고 있다. 동 중재법 제7조 1항, 2항, 3항에 중재인의 선정(제12조 3항, 4항), 중재인의 기피신청(제14조 3항), 중재인의 권한종료(제15조 2항),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제17조 6항), 증거조사(제28조), 중재판정원본의 보관(제32조 4항), 중재판

1) Alan Redfern et al.,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04, pp. 329-330.

2)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에서는 법원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6조에 “...이 모델법을 입법하는 각 국가는 법원 또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타 기관을 명시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UNCITRAL 모델법 제6조에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 법 제35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와 제36조(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그리고 취소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cf. Schlosser, “The Competence of Arbitrators and of Courts” (1992), Arbitration International at 189 and Kerr, “Arbitration and Courts”: *The UNCITRAL Model Law*” (1985) 34 I.C.L.Q.I.

4)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우리나라 중재법 제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정취소의 소(제36조 1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제37조, 제39조)를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는 사인간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양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하게 되며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만 중재가 효율적으로 실현되어 진다. 하지만 국가의 강제력과 공권력이 때에 따라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재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범위를 한정시켜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제한되어야 하는 법원의 중재에 대한 역할을 우리나라 중재법과 국제협약, 통일규칙, 그리고 미국중재협회(AAA)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중재규칙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살펴봄으로써 중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중재 개시 전 법원의 개입

### 1. 중재합의의 유효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만약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다면, 일반적인 다른 계약 들처럼, 당사자들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동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기대되어지는데 만약 일방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나 유효성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방당사자의 소송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합의 직소금지 효력을 이유로 항변을 하게 되고 이에 중재에 있어 법원이 개입하게 된다.

국제통일규칙<sup>5)</sup>과 국제협약<sup>6)</sup>에서 중재합의의 직소금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5) UNCITRAL 모델법 제8조에 "①중재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었을 경우로서, 일방당사자가 그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차 진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실효하였거나, 또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언급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개시되거나 수행될 수 있으며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이 행해질 수 있다"

있는 바 법원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동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에 반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도 이러한 직소금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sup>7)</sup>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불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중재법원의 의견상 심사(prima facie examination)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해주는 선언적 판결(a declaratory judgment)을 법원에 부탁할 수 있다.<sup>8)</sup>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UNCITRAL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9)</sup>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중재개시 전에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상 중재합의가 무효이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sup>10)</sup>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라고 규정하고 있다.

- 6) 뉴욕협약의 제2조에 “각 계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계약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7) 우리나라 중재법 제9조 1항.
- 8) Mauro Rubino-Sammartano,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 385.
- 9) UNCITRAL 중재작업반(Working Group II)은 제40번째 회의에서부터 최근의 제44번째 회의(2006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까지 중재합의의 서면성과 서명성(signature), 그리고 잠정적 중간조치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제44번째 회의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면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서면으로 이루어진 중재합의라는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양당사자간에 의하여 서명이 된 계약서나 중재합의 또는 이를 포함하는 양당사자간에 교환되어진 편지나 텔레그램을 의미한다’는 규정이 현대 실정, 즉 현대의 발달된 통신 수단과 전자거래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cf. www.un.org 내의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I(Arbitration) Forty-fourth session. A/CN.9/WG.II/WP.139.
- 10)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p. 57.

살펴보면, 두산산업개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소<sup>11)</sup>를 법원에 제기하지만 법원은 두 당사자간에 합의한 중재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sup>12)</sup>으로서 중재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방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해결을 반대하였으므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다.<sup>13)</sup> 둘째, 중재합의가 외견상(prima facie) 존재하면 일단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고 분쟁을 중재에 맡긴 후에, 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는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이나 승인·집행 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이다.<sup>14)</sup> 후자의 경우는 중재가 일단 개시된 후에 중재합의의 유효성<sup>15)</sup>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16)</sup>

중재합의가 발생한 분쟁에 있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하나의 논점이 되는 것이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의 여부이다.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보통 양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때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sup>17)</sup> 하지만

- 
- 1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판결 [중재판정취소], [공2004.12.15.(216), 2008.
- 12) 양당사자가 합의한 선택적 중재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쟁을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13)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해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공2003.10.1.(187), 1916], 주식회사 로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에서도 법원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양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 이의가 없을 때에만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 14) 상거서, p. 57.
- 15) 각 국가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중재법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에는 이를 잘 알고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이집트 법에서는 중재합의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동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다. cf. *M. V. Lela v. Gulf Contractors case*, April 26, 1982.
- 16)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385.
- 17) 계약 당사자들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려 할 것이지만 이 또한 중재가능한 분쟁의 범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이다. 대한민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에서는 "All disputes.... out 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라고 명시하여 비교적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른 표준중재조항을 보면, ICC는 "All disputes ....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AAA는 "Any controversy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LCIA는 "Any dispute ...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발생한 분쟁이 중재합의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일방당사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가 개시되기 전에 관할 법원에게 중재가능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중재가 개시된 후에 중재판정부에게 중재가능성을 판단하여 주도록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 전에 중재인이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sup>18)</sup> 어느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쟁의 중재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항상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PowerAgent Inc. v. Electronic Data Systems Corp.* 사건<sup>19)</sup>에서 볼 수 있듯이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양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부탁하여 중재를 진행하게 되고 절차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후에 어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기피할 수 없다.<sup>20)</sup>

*Onvoy Inc. v. SHAL LLC.* 사건<sup>21)</sup>에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중재가능성에 대해서 각기 다른 법원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Onvoy Inc.*는 관할 지방법원에 *SHAL LLC.*와 그 외 합병회사들을 상대로 10년 기간으로 체결되었던 리스계약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피고인들은 계약서에 존재하는 중재조항을 들어 항변을 하게 된다. 이에 지방법원은 *Onvoy Inc.*의 소송은 피고인들과의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이므로 중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반면 *Minnesota* 항소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송제기의

즉 발생한 분쟁이 중재가능한지는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8)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이 양당사자가 된 중재에서 중재개시 후 중재인은 ‘중재인이 스스로 그 신청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다. cf.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 70256 판결 [공2004.11.15.(214), 1803].

19) *PowerAgent Inc. v. Electronic Data Systems Corp.*, 358 F. 3D 1187 (9th Cir. 2004).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PowerAgent Inc.*는 *Electronic Data Systems Corp.*을 상대로 여러 개의 관련 있는 계약들의 위반을 이유로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법원은 계약서에 존재하는 중재조항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 *PowerAgent Inc.*는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추가적인 분쟁을 의도적으로 다시 제기하게 되고 이를 중재판정부에 추가 분쟁에 대한 중재가능성을 판정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절차에 따라 중재가 진행된다. 후에 패소한 *PowerAgent Inc.*는 내려진 중재판정을 ‘중재합의 외의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다. *Review of Court Decision, “Repeated Arbitrability Challenges”,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4. Nov 2004-Jan 2005. pp. 92-93.*에서 인용.

20) *Review of Court Decision, “Jurisdiction to determine arbitrabilit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2. May 2004-Jul 2004. pp. 91-92.*

21) *Onvoy Inc. v. SHAL LLC.* 669 N.W.2d 344 (Minn. Sept. 25, 2003)(en banc).

의도는 단순히 계약해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감안한 것이므로 동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sup>22)</sup>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일단 중재합의를 하게 되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다면, 어느 일방당사자가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를 법원이 강제하여 무조건 중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재 개시 강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Milan Presse 사건<sup>23)</sup>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의장 중재인이 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방당사자(신청인)는 쟁점사항(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상대방당사자(피신청인)를 강제하기 위하여 중재개시명령 신청을 파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파리 법원은 중재개시 명령은 중재의 조력으로서 간섭하여야 하는 법원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기각한다.<sup>24)</sup>

Pepsico 사건<sup>25)</sup>에서는 일방당사자는 분쟁을 뉴욕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에 대해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미국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는 반면, 상대방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애매성과 불명료성을 이유로 중재합의는 무효이며 이에 동 분쟁을 베네수엘라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하게 된다. 이에 미국 법원은 중재의 개시에 대한 즉각적인 명령을 거절하지만 사법권은 유지하며, 동시에 베네수엘라 법원의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가능 기일을 60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베네수엘라 법원은 사법권을 거절하게 된다.<sup>26)</sup>

22) Review of Court Decision, "Arbitrabilit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1, Feb2004-April2004, pp.89-90.에서 인용 cf. Patrick M. Baron and Stefan Liniger, "A Second Look at Arbitrability - Approaches to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Switzerland and Germany",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19, Issue. 1, Mar 2003, pp. 27-54.

23) *Regimage v. Milan Press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November 16, 1994, Rev. arb. 1995, 565.

24)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385.

25) *Pepsico Inc. et al. v. Oficina Central de Acessoria Ayuda Tecnica Cia*, U.S. District Court, District Court of New York, October 28, 1996 no 96 Civ. 7817 (J.S.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1998, 919.

26)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385.

## 2. 중재인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의 법원의 개입은 중재인 선정을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부탁함으로써 중재기관에 일임하는 기관중재에서 보다는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에서 더 중요하다. 임의중재는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절차상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정한 규칙을 따라서 중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임의중재의 경우에 중재합의에서나 또는 사후에 당사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중재인 선정은 종종 법원이나 제도적 또는 전문 기관, 또는 상업회의소 혹은 다른 기관이나 자연인 등에 위임 된다<sup>27)</sup>.

우리나라 중재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당사자에 의한 중재합의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또는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중재인 선정을 부탁받게 되면 단순히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고 이로써 법원의 임무는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인 선정 후에도 법원은 중재에 더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법원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들이 동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후에 동 중재합의로 인한 중재판정도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한 이때 중재합의의 무효로 인하여 중재인들이 중재를 개시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명령해 주기를 법원에 요구하게 된다.<sup>28)</sup>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인 선정에 이어 중재합의의 유효·무효성의 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대한 국제협약의 입장을 보면, 1927년 제네바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승인 또는 집행을 얻기 위하여 다음이 필요하다 ; (c) 중재판정은, 중재합의

27) *Ibid.* p. 379.

28) *Ibid.*, p. 380.

29) Art. 1, (c). Geneva Convention (1927).



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하고, 그리고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에 일치하여 내려진다.”

1958년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다음과 같다.<sup>30)</sup>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가 없을 때 중재가 행해지는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1961년 유럽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자유롭게 다음에 부탁한다.

- (a) 상설중재기관 ; 이러한 경우에 중재절차는 동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일치하여 이루어진다.
- (b) 임의중재절차의 경우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다음을 할 수 있다.
  - (i) 실질적인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인 선정을 위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965년 워싱턴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32)</sup>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와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이 한명씩 선정되고 제3의 중재인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선정되고 의장중재인이 된다.

제36조 3항에 의하여, 사무총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요청이 통지된 후 90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다른 기한 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지지 않으면, 의장중재인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들과 논의한 후에 선

30) Art. V, (d), New York Convention (1958).

31) Art. IV, (1), Europe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61).

32) Art. 37. (2), (b), Washington Convention (1965)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정되지 않은 중재인을 선정할 것이다.“

1985년 UN모델중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33)</sup>

“(2) 당사자들은, 이 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3)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a)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에서는,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각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로부터 중재인 선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또는 2인의 중재인들이 자신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의 중재인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6조에 명시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의하여 선정된다.

(b)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6조에 명시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의하여 선정된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도 중재인 선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sup>34)</sup>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33) Art. 11, (2) and (3), United Nations Model Law (1985).

34) 우리나라 중재법 제12조 4항.

### Ⅲ. 중재절차 진행 중의 법원의 개입

#### 1.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은 양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재인과 양당사자들 간의 신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그 중재인을 기피하는 것이 중재의 신뢰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인의 기피를 남용하고 중재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들은 중재인의 기피사유에 대해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법원의 역할은 이러한 중재인의 기피에 있어 더 중요하다. 국내사법제도는 중재인 기피에 대한 결정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나 중재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이 중재인 기피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35)</sup> 결과적으로 임의중재와 기관중재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임의중재에서는 중재인의 기피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반면에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법원(중재판정부)이 중재인의 기피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재인 기피에 대한 세계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살펴보면, ICC 중재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36)</sup>

“ 중재인의 선정, 확정, 기피, 보궐에 관한 중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보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중재협회(AAA) 중재규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sup>37)</sup>

35)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389.

36) Art. 7. (4), 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1998).

37) Art. 19,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중립적인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과거나 혹은 현재에 어떤 관계가 있거나 또는 중재의 결과에 어떤 편견이나 경제적 혹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중재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국중재협회(AAA)에 알려야 한다. 중재인이나 다른 근거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미국중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양당사자들과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중재인이나 다른 이들에게도 알린다. 중립적인 중재인의 계속되는 임무를 일방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미국중재협회는 중재인이 자격이 없는지를 결정하고 양당사자들에게 확정적인 결정을 알린다.”

미주상사중재위원회(IACAC) 규칙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up>38)</sup>

“만약 다른 당사자가 중재인의 기피에 동의하지 않고 기피된 중재인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재인 기피에 대한 결정은 미주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규칙은 중재인 기피에 대하여 중재법원의 관할권을 확인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국가법원의 관할권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sup>39)</sup>

“10.3 특정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지명하였거나 지명에 관여한 중재인에 대해서는 지명 후에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

10.4 특정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또는 제10조 (1)항, (2)항 또는 (3)항에서 규정한 사정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LCIA법원, 중재판정부 그리고 다른 당사자 전원에게 기피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기피신청의 대상인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모든 당사자가 위 기피신청서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LCIA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8) Art. 12, (1), Rules of the Inter American Arbitration Commission.

39) Art. 10, (3), (4), Rules of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1998).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40)</sup>

“상대방이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 기피를 받은 중재인이 사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 (a) 최초의 중재인선정이 중재인 선정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선정권자가 이를 결정하고,
- (b) 최초의 중재인선정이 중재인 선정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중재인 선정권자가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선정권자가 이를 결정하고,
- (c)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제6조에 규정된 중재인 선정권자가 이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중재인 기피의 1차적인 권한은 중재판정부에 있으나 만약에 중재판정부가 중재인 기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피를 신청한 일방당사자는 2차적으로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sup>41)</sup>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기관중재에서는 국가법원의 동시관할권을 배제하면서 중재기관이 자체적으로 중재인 기피에 대해 심문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어떤 관할권에서는 중재기관의 중재인 기피에 대한 결정은 행정적 성격의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42)</sup> 준거절차규칙이 중재인 기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40) Art. 12. (1), UNCITRAL Arbitration Rules(1976).

41) 우리나라 중재법 제14조 3항과 4항.

42)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393.

취하든지 간에 규칙으로써 국가법원은 중재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광범위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중재인 선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재는 계속 진행이 되고 후에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중재인 선정의 잘못을 이유로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가 법원에 제기되어질 때 비로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잠정적 보전조치

중재과정 중에 법원이 개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잠정적 보전조치를 명령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법제도에서 중재인들은 이러한 권한을 박탈당하고 이는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되기도 한다.<sup>43)</sup> 그러나 법원조차도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중재과정 중에 있는 당사자는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sup>44)</sup> 물론 어떤 사법제도에서는 중재인에게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한적이다.<sup>45)</sup> 예를 들면 스위스의 경우에 중재인에게 잠정적 보전조치에 대해 명령이 아닌 잠정적 보전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46)</sup> 홍콩법은 중재인은 중재합의나 중재진행절차 중에 양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범위 안에서만 보전 및 중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도법도 분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중재판정부에게 중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47)</sup>

43) *Ibid.*, p. 404.

44)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일방당사자(피신청인)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타방당사자(신청인)가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미국중재협회(AAA)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중재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시간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잠정적 조치(Emergency Relief)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다. 이는 양당사자가 중재합의를 맺을 때 중재조항에 삽입할 수 있고 또한 상황이 AAA에서 규정한 경우라면 신청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cf. Review of Court Decision, "Arbitral Interim",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7. Issue. 4. Nov 2002-Jan 200. pp. 65-66.

45) 중재판정부가 가지게 되는 잠정적 조치의 명령 권한의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잠정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과 역할을 중재의 조력의 시점에서 보았다. 그 반대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Professor Dr. Hans Van Houtte, "Ten Reasons Against a Proposal for Ex Part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0. Issue. 1. Mar 2004. pp. 85-95.

46) Art. 26. Swiss Concordat 1969.

47)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405.

때때로 중재규칙이 중재판정부에 특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프랑코-아랍 상공회의소와 파리의 중재회의소가 그러한 경우이다.<sup>48)</sup>

이렇듯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법원의 보전 처분과는 그 범위나 강제성면에서 차이가 있다.<sup>49)</sup>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물적 대상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중재판정부가 가지는 임시적 조치는 그 대상이 분쟁의 목적물에 한정되지만 법원의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그 물적 대상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 둘째, 인적 대상범위에서의 차이인데, 중재판정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분쟁당사자로 제한되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 셋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조치는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의 보전조치의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적 조치명령에 대한 강제성으로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잠정조치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지만 법원의 보전조치명령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다.

중재판정부가 가지는 잠정적 보전조치가 법원이 가지는 권한보다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중재인의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는 사법계 국가에서는 법원과 중재인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더 나아가 사인간의 해결제도인 중재를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에 잠정적 보전조치를 일방당사자가 요청하게 되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중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하는 논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잠정적 보전조치를 법원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을 중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통일규칙과 몇몇 나라의 중재규칙에서도 볼 수 있는데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0)</sup>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사법당국에 잠정보전조치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은 중재합의와 모순되거나 또는 중재합의의 권리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1)</sup>

48) *Ibid.*, p.405.

49)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 클레임과 상사중재 및 ADR, 두남, 2003, p. 401.

50) Art. 26. (3), UNCITRAL Arbitration Rules(1976).

“제25조 1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잠정적 보전조치에 관한 권한)은 중재판정부 구성 전 또는 예외적인 경우 구성 후 당사자가 국가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에 임시적 보전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 된 후 그러한 조치에 대한 요청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즉시 이를 중재판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제25조 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 관련 담보제공 명령을 국가법원 또는 기타 사법당국에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AAA 중재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2)</sup>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처분금지명령, 보전조치 또는 재산보전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임시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인시적 조치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재합의와 양립할 수 없다거나 중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ICC 중재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3)</sup>

“양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전 및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중재판정부가 중재문서를 수령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절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일방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사법당국에 잠정 및 보존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 또는 중재재판부가 지시한 그러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일방 당사자의 사법당국에 대한 요청이 중재합의에 대한 침해나 권리포기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중재재판부에 부여된 해당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듯 양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전처분에 대한 중재판정부

---

51) Art. 25. (3), LCIA Rules.

52) Art. 21. (1) and (3), AAA Rules.

53) Art. 23, ICC Rules of Arbitration.



의 권한은 인정되고 이에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의 보전처분과 비교하면 그 대상에 있어 한계가 있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법례들은 중재절차에 무관하게 법원의 보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재에 있어서의 보전처분에 대해 우리나라 중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4)</sup>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5)</sup>

“일방당사자가 중재절차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거나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보전처분의 신청과 이용은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전과 진행하는 도중에도 양립할 수 있다.

### 3. 증거조사

중재절차 중 중재인의 적극적이지 못한 양상 중의 하나는 중재인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중재인의 권한 부족이다. 중재진행 중에 중재인에 의해 명령되어지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 등은 양당사자나 제3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과는 달리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사법제도에서는, 특별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 중재인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법원이 필요에 따라(중재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54) 우리나라 중재법 제10조.

55) Art. 9,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중재진행 중의 증거 조사를 위한 법원의 개입은 중재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법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보통 중재인은 증거 조사를 위하여 외국 법원에 중재인의 명령 집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어지지 않지만, 이를 중재지의 관할법원이 중재인을 대신하여 외국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다.<sup>56)</sup> 즉, 법원의 개입으로 중재인은 증거 조사를 위하여 증인을 소환하거나 문서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나 공교롭게도 많은 사법제도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sup>57)</sup>

미국중재협회(AAA)의 중재규칙을 살펴보면 중재진행중의 증인출석이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개입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단지 중재판정부가 이를 명령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sup>58)</sup>

“..중재절차 중에 중재판정부는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서류, 증거서류,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UNCITRAL에서 제정한 중재규칙도 중재판정부가 증거조사에 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9)</sup>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중의 어느 시점에서든 당사자 쌍방에게 판정부가 결정하는 기간 내에 서류, 증거물 또는 기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영국의 LCIA 중재규칙<sup>60)</sup>과 ICC 중재규칙<sup>61)</sup>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였을 뿐 해당 당사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중재진행 중의 증거조사 및 증인 출석 명령에 대한 법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국제협약의 입장을 보면, 유럽중재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62)</sup>

56)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399.

57) *Ibid.*, p. 395.

58) Art. 19. (3)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59) Art. 24. (3) UNCITRAL Arbitration Rules(1976),

60) Art. 19 and 20, The LCIA rules,

61) Art. 21,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만약 증인이 요구되어지는 대로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해당 증인이 출석을 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63)</sup>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포함하는 중재절차는 양당사자의 의지와 중재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계약국은 자신의 영역에서 취하도록 요구되어지는 모든 조치를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할 것에 합의한다.”

UN 모델중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64)</sup>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방당사자는 증거를 획득하는데 있어 그 국가의 관할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그 권한 내에서 그리고 증거취득의 규칙에 따라 그 요청을 이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도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sup>65)</sup>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sup>66)</sup>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62) Art. 17. (9), European Court of Arbitration (1997 edition).

63) Art. 2, Geneva Convention (1923).

64) Art. 23, United Nations Model Law.

65) 우리나라 중재법 제28조 1항.

66) 제28조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행하여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 IV.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의 법원의 개입

### 1. 중재판정원본 보관

중재는 사인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바탕으로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판정 또한 사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법원 등의 공적인 장소에 보관해 둬으로써 공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sup>67)</sup> 이러한 중재판정원본의 법원 보관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각국의 입법이나 국제협약 등이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요구하는데,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의 확정을 공인받는 것이다. 둘째, 중재판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시될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하여 준다. 중재가 어느 특정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기관중재라면 중재판정원본을 그 특정기관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관을 통하지 않은 임의중재라면 중재판정원문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법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원본의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sup>68)</sup>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보관한다.”

### 2. 중재판정취소

중재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사적기관인 중재기관에 의하여 사인인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67) 목영준,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제295호, 2000, p.33.

68) 우리나라 중재법 제32조 4항.

판정이거나 특별한 흠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그 집행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그 판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것이다.<sup>69)</sup> 또한 이러한 이유라면 중재판정에서 패한 일방당사자도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판정을 취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이에 법원은 또다시 개입을 하게 된다.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중재판정의 취소는 억울하게 패한 일방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나 국가의 공공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재제도의 존재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는 취소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70)</sup>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를 취소 신청을 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중재합의의 일방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무효·부존재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입각하여 행하여진 중재판정을 법원은 취소할 수가 있다.<sup>71)</sup> 이 때 이러한 사실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양당사자가 지정한 법이거나 만약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sup>72)</sup>이 준거법이 된다.

둘째, 양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하는데 만약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나 그 외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질 수 있다.<sup>73)</sup>

셋째, 중재는 양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인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중재관할권의 범위 내에서만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 대하여 행하여져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부탁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중재판정부분에 한하여만 취소될 수 있다.<sup>74)</sup>

69) 목영준, 전게서, p.211.

70) 최장호, 전게서, pp. 416-419.

71) Art. 34. (1) (i), UNCITRAL Model Law.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 2항 1호 (가).

72)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73) Art. 34. (1) (ii), UNCITRAL Model Law.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 2항 1호 (나).

넷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절차법규에 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중재판정은 취소되어 질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강행규정에 반한다면 강행규정이 우선시된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거나 해당하는 준거법을 따르지 않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중재절차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sup>75)</sup>

앞서 언급한 이유들은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지법에 의하여 중재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고 부적격한 것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sup>76)</sup>

둘째,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중재지국의 공서양속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sup>77)</sup> 여기서 말하는 공서양속이나 공공질서의 개념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 또는 강행법규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앞서 언급한 어떠한 사유이든지 간에 중재판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중재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첫째, 중재판정만 취소될 뿐 중재합의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어 중재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재합의의 효력까지도 소멸되어 분쟁을 중재가 아닌 소송 등의 기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재판정 취소 후 중재합의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소멸하는지의 판단은 중재합의의 목적 달성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재판정이 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는지를 따져 그 취소 사유로 중재합의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중재인 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중재합의 범위 밖의 사항에 대해서 판정을 내린 경우, 또는 중재진행 중 어느 일방당사자에게 불공평하게 진행이 되어 중재판정이 취소가 된 경우

74) Art. 34. (1) (iii), UNCITRAL Model Law.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 2항 1호 (다).

75) Art. 34. (1) (iv), UNCITRAL Model Law.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 2항 1호 (라).

76) Art. 34. (2) (i), UNCITRAL Model Law.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 2항 2호 (가).

77) Art. 34. (2) (ii), UNCITRAL Model Law.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 2항 2호 (나).

78) 최장호, 전계서, p. 419.

라면 중재합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중재합의는 그 효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중재판정만 취소될 뿐 중재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중재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재합의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고, 중재판정이 국가의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중재합의의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그 판정을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까지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당사자는 만약에 원한다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sup>79)</sup>

중재판정 취소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관할법원을 잘 판단하여야 한다. *Karaha Bodas. v. Perusahaan Pertambangan(Pertamina)* 사건<sup>80)</sup>을 보면 중재에서 패소한 Pertamina가 스위스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반면에 승소한 KBC(Karaha Bodas Company)는 미국 연방법원에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Pertamina는 인도네시아 절차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었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해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내려진 동 중재판정을 인도네시아 법원이 취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에 스위스법원은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관할법원은 동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스위스 법원은 뉴욕협약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중재에 있어 오직 한 국가만이 사법권을 가질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해당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 명시한 스위스가 사법권을 가진다고 판시, 따라서 관할권이 없는 인도네시아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81)</sup>

79) 목영준, 전거서, p. 235.

80) *Karaha Bodas Co., L.L.C. v.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 Nos(Pertamina)*. 02-20042 & 03-2-6-2, 2004 WL 541837 (5th Cir. March 23, 2004).

81) Review of Court Decision, "Effect of Award Annulled by a Country Lacking Primary Jurisdic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2. May 2004-Jul 2004. pp. 90-91에서 인용.

###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대부분 국가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재에 있어서의 법원의 개입은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개입은 중재절차가 끝나는 후반부에서 더 중요해진다. 즉, 중재판정이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동 중재판정은 다른 사법권은 물론 중재지에서조차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sup>82)</sup>

중재에서 법원의 개입 형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사적인 기관에 의해 사인이 해결해 주는 제도이므로 중재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을 따르고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하고 따르도록 강요할 방법이 없다면 중재제도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개시나 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엄격하고 공정한 소송절차와 같은 규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중재인도 사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조건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내중재판정이 아닌 외국 중재판정<sup>83)</sup>의 경우에는 이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데 있어 국가의 법원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할 것이다.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데 있어 일방당사자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 되면 해당 관할법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ncyclopaedia Universalis, S.A. v.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사건에서 보면 집행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양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중

82) Mauro Rubino-Sammartano, *op. cit.*, p. 400.

83) 외국중재판정의 개념은 집행국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집행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 하더라도 집행국이 국내중재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집행국이 국내중재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중재절차에 다른 나라의 절차법을 적용한 경우라든지 또는 집행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 사이에 집행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집행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여기서 집행국은 양당사자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3국이 될 것이다.



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sup>84)</sup>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 판례가 있는데, K&V International Emb. Co., Ltd. 와 션스타 특수정밀 주식회사간의 중재에서 내려진 판정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집행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sup>85)</sup>

이러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중재의 국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편리하게 하였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재법도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내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 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sup>86)</sup>하여 영토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국내중재판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중재판정취소사유(제36조 2항)가 없는 한 그 집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외국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동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 중재판정을 외국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1항 및 제477조의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84) Review of Court Decision, "Court Upholds Non-Enforcement of N.Y. Convention Award".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60. Issue. 2. May 2005-Jul 2005. p. 9에서 인용. 사건의 개요는 양당사자는 임의중재를 하기로 합의하고 양당사자가 각각 한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두 명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영국상업회의소에 있는 중재인 후보 명단에서 룩셈부르크 상사중재법원의 의장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ncyclopaedia Britannica Inc.가 지명한 중재인은 본인의 참여 없이 Encyclopaedia Universalis, S.A.가 일방적으로 룩셈부르크 상사중재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여 제3의 중재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동 중재를 개시·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재는 진행이 된다. 하지만 후에 집행국의 관할 법원은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진행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동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된다.

8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공2003.6.1.(179),1148]. 판결의 요지는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익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86) 우리나라 중재법 제38조.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87)</sup> 또한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에 따르도록 하였다.<sup>88)</sup>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중재판정으로 규정함에 있어 뉴욕협약 제1조 1항에서는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일지라도 국내중재판정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각주 83번 참조) 이는 외국중재판정이 될 것이고 동시에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중재에 있어 법원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앞서 서언에서 관할법원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였다(각주 4번 참조). 우리나라 중재법 제7조 4항에 관할법원을 “(i)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ii)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iii) 피고소유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iv)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관할법원이 순차적이고 보충적인 것과는 달리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법원은 선택적이다. 선택적이라 함은 집행을 청구하는 원고는 집행지의 법적 환경, 소송의 편의성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위의 4가지 관할법원 중에서 하나를 우선순위 없이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89)</sup>

87) 우리나라 중재법 제39조 2항.

88) 우리나라 중재법 제39조 1항.

89) 목영준, 전거서, p. 267.

## V. 결론

중재가 국가의 권력을 빌리지 않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권력인 법원의 도움이 전혀 없이는 효율적이 실행이 불가능하다. 즉, 적절한 법규정이 뒷받침되는 법원의 지원역할 없이는 중재가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재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중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의 개입을 허용해 주고 있다.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정도는 각 국가의 중재법제에 따라 다른데,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법제가 있기도 하고 법원의 개입을 제한시키는 법제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법원의 개입을 살펴보면, 첫째,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리, 감독, 통제 기능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이 있다. 이는 법원이 국가 법률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정당하게 적용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90)</sup> 중재판정은 법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법적효력과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법원의 심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와 지원 기능으로 중재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이 있는데, 이는 중재합의의 이행,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기피, 증거조사, 중재판정의 집행으로 특히 중재판정부와 법원간의 협력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sup>91)</sup>

중재의 보편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재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면서 중재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원은 중재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협조와 지원을 해 주며 감독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90) 최장호, 전거서, p. 438.

91) 상거서, p. 438.

### 參考文獻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 클레임과 상사중재 및 ADR, 두남, 2003.
- 목영준,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제295호, 한국의 중재법.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 Baron, Patrick M. and Liniger, Stefan, "A Second Look at Arbitrability - Approaches to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Switzerland and Germany",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19. Issue. 1. Mar 2003.
- Friedland, Paul D., *Arbitration Clauses for International Contract*, Juris Publishing Inc, 2002.
- Houtte, Hans Van, "Ten Reasons Against a Proposal for Ex Part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0, Issue. 1, Mar 2004. pp.85-95.
- Redfern, Alan et al.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04.
- Review of Court Decision, "Arbitral Interim",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7, Issue. 4, Nov 2002-Jan 2003.
- Review of Court Decision, "Arbitrabilit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1, Feb 2004-April 2004.
- Review of Court Decision, "Jurisdiction to determine arbitrabilit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2, May 2004-Jul 2004.
- Review of Court Decision, "Effect of Award Annulled by a Country Lacking Primary Jurisdic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2, May 2004-Jul 2004.
- Review of Court Decision, "Repeated Arbitrability Challenges",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9, Issue. 4, Nov 2004-Jan 2005.
- Review of Court Decision, "Court Upholds Non-Enforcement of N.Y. Convention Award",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60, Issue. 2, May 2005-Jul 2005.
- Rubino-Sammartano, Mauro,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ICC Rules of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Rules of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Washington Convention).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http://www.kcab.or.kr>  
<http://uncitral.org>  
<http://iccwbo.org>  
<http://adr.org>  
<http://lcia-arbitration.com>  
<http://un.org/>

## ABSTRACT

### The Role of State Courts Aiding Arbitration

Park Eun Ok

An Arbitration agreement is one kind of contract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any possible disputes that arise concerning a contract will be settled by arbitration. Contracting parties who have made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will submit a dispute for settlement to private persons(arbitrators) instead of to a court. Arbitration may depend upon the agreement of the private parties, but it is also a system which has been built on the law and which relies upon that law in order to make it effective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at is to say, arbitration is wholly dependent on the underlying support of the court. The complementarity of the courts and of the arbitrators is a well-established fact; they seek for the common purpose, the efficac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st states' laws contain the provisions which have been set for the supportive role of the courts relating to arbitration; ① the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rulings on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nal at the beginning of the arbitration, ② challenge of arbitrators, interim measures, and intervention during evidence in the middl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③ filing of the award, challenge of the arbitral award,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at the end of the arbitration.

Mos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national laws concerning arbitration believe that authoritative courts should play their power not to control and supervise arbitration but to support and develop the merits of arbitration at most. 1985 UNCITRAL Model Law also expressly limit the scope of court's intervention to assist arbitration, not to control it.

Key Words : arbitration agreement, interim measure, evidence, arbitral award,
---